



제429회 국회(임시회)
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
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·운영 근거 마련〉
■ 김도읍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0137호)

2025. 11.

법 제 사 법 위 원 회
전문위원 박 혜 진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김도읍의원 등 10인
2. 제 안 일 : 2025. 4. 25.
3. 회 부 일 : 2025. 4. 28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부처별·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·경제·심리·고용·복지·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 11조의3).

Ⅲ. 검토의견

-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(이하 ‘통합지원센터’)의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고, 통합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하며,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·수익도 무상으로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의3 신설).

현행	개정안
<u><신설></u>	<u>제11조의3(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) ① 국가는 부처별·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·경제·심리·고용·복지·금융 등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(이하 “통합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 <u>② 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u> <u>1.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</u>

현행	개정안
	<u>계획의 수립</u> 2. <u>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의 제공·연계 및 사례관리</u> 3. <u>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관계 기관·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</u> 4. <u>범죄피해자 통합지원에 관한 조사·연구</u> 5. <u>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관련 통계의 관리·분석</u> 6. <u>그 밖에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</u> ③ <u>법무부장관은 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·단체의 장(이하 이 조에서 “관계 기관의 장”이라 한다)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</u>

현행	개정안
	<u>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u> <u>④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</u> <u>⑤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의 절차, 통합지원센터에 파견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자격, 비용 부담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
□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 인력이 입주한 ‘통합지원센터(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 센터)’¹⁾ 설치를 추진하고 시

1) 법무부는 “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법무부 직제상 명칭”이라며 “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적 공간에 대해선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”고 설명한 바 있음(세계일보, “법무부, ‘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’ 신설… 지원 체계 구축”, 2024. 6. 25.)

범사업 성격으로 2024. 7. 서울에 첫 센터(이하 ‘서울 센터’)를 설립한 후 2025. 11. 현재까지 운영 중인데,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인 「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²⁾ 및 시행규칙인 「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³⁾에 관련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.

- 현재 통합지원센터는 법무부 인권국 소속 부서로, 서울 센터에는 주무기관인 법무부와 14개 참여기관(검찰, 경찰,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)을 포함하여 소속 인력 51명이 상주하면서 범죄피해자의

2) 제11조의2(인권국) ①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

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국가 인권정책 수립·총괄·조정
2. 인권옹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 및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
3. 인권 관련 국제조약·법령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행사·홍보에 관한 사항
4.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
5.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
6.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
7. 「인신보호법」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·연구
8. 준법정신의 계도
- 8의2. 삭제 <2023. 8. 8.>
9. 범죄피해자의 보호·지원에 관한 사항
10.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및 법률구조법인의 등록·지도·감독
11. 법률구조증진에 관한 사항
12. 수사·교정·보호·출입국·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,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
13. 여성·아동 인권 관련 정책의 수립·총괄·조정·시행 및 관련 법제의 개선
14. 여성·아동 인권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
15.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

3) 제7조의2(인권국) ①인권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

②인권국에 인권정책과·인권구조과·인권조사과·여성아동인권과 및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둔다.

(생략)

⑧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신설 2024. 6. 25.>

1.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
2.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관계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
3.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실시에 관한 사항
4.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관련 통계 관리·분석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수요를 파악한 후 법률, 심리치료, 고용, 금융 상담의 경우 서울 센터에서 직접 지원하고, 구조금, 치료비, 생계비, 주거지원, 안전 조치, 불법영상 삭제 등의 서비스는 원소속기관(검찰청, 경찰청, 서울시 등)으로 연계하고 사례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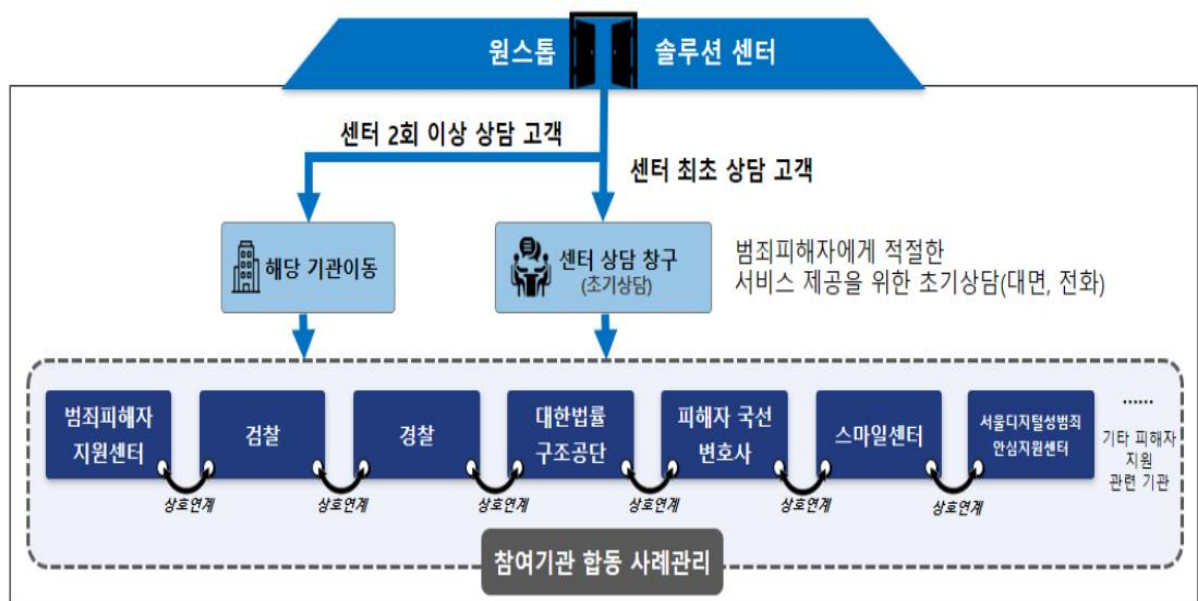
〈통합지원센터 참여기관 및 지원내용〉

참여기관	인원 (명)	지원내용
검찰	12	· 범죄피해구조금 안내 · 접수 · 치료비, 생계비, 학자금, 장례비 등 경제적지원 (5주 이상) 안내 · 접수 · 이전비 지원, 주거지원 등 안내 · 접수
경찰	2	· 위치확인장치 지급, 범죄피해자 안전조치, 임시 숙소 제공 · 민간경호 지원 등
고용노동부 고용센터	2	· 취업지원, 실업급여 지원 연계 · 직업상담, 직업교육 지원 등
서울특별시 복지지원팀	1	· 기초생활수급 관련 안내 · 연계 · 긴급복지 지원, 사회적약자 지원 복지 안내 · 연계 등
서울특별시 일자리센터	2	· 서울시 보유 일자리 상담, 구인구직 등록(직업상담사)
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안심센터	1	·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· 수사 · 재판 모니터링, 신뢰관계인 동석, 법정동행 등 지원 · 법률지원, 심리상담 지원, 의료지원 등
서울특별시 스토킨 피해자원스 톱지원센터	13	· 법률지원, 심리치료 지원, 의료지원 · 보호시설 연계, 이주비 지원 · 민간경호 지원 등
법률홈닥터	6	· 범죄피해자 법률적 문제 상담 · 법률서류 작성 지원 · 복지서비스 연계
진솔조력인	2	· 성폭력 · 아동학대 · 장애인학대 · 인신매매범죄 등 피해자의 의사소통 중개 · 보조(19세 미만, 장애 등으로 의사소통 어려운 경우)
대한법률구조공단	1	· 범죄피해자의 민 · 가사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

피해자 국선변호사	1	· 범죄피해자 법률적 문제 상담 ·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
범죄피해자지원센터	1	·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, 사례관리 실시 · 각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원스톱 전담인력을 통한 전국 연계 · 긴급생계비, 치료비, 학자금,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(5주 이하) · 수사, 재판기관 동행·모니터링 등
스마일센터	2	·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· 스마일센터 임시숙소 연계
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(신용회복위원회, 서민금융진흥원, 하나미소금융재단)	2	·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저리의 서민금융상품 대출, 신용회복 지원,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등 제공
총 인원	51	-

자료: 법무부

〈서울센터의 운영 방식〉



자료: 법무부

□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근거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타 기관에 대한 파견 등 협조 요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,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및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입법 취지 및 목적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.

○ 개정안은 국가가 통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무부장관이 동 센터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○ 한편, 동 센터를 국가가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37조4)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.

4)제137조(건전재정의 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,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.

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·확장·이전·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.

1. 「정부조직법」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

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
3. 국가가 출자·출연한 기관(재단법인,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)

4. 국가가 설립·조성·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(재단법인,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)

④ 국가는 제3항 각 호의 기관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입지 선정의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.

- 이와 함께 공유재산의 무상사용·대부와 관련하여서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및 제34조⁵⁾를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□ 참고로, 행정안전부에서는 개정안의 ‘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’의 법적 성격이 불분명하나, 법무부의 ‘하부조직’ 또는 ‘부속기관’으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「정부조직법」⁶⁾ 및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⁷⁾에 따라 「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로

- 5) 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 2.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이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, 그 상속인,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
 3.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
 4.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.
- 제34조(대부료의 감면)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.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 2.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- 6) 제2조(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)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·차장·실장·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. 다만, 실장·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·단장·부장·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, 실장·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·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.
-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.
- 제4조(부속기관의 설치)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·교육훈련기관·문화기관·의료기관·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.
- 7) 제4조(직제 등)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「정부조직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정하고, 그 명칭을 “○○직제”로 한다.
-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(이하 “직제 등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사항이

정하여야 하고, 공유재산은 유상 사용이 원칙인 점과 통합지원센터
를 국가가 설치·운영하도록 한다면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
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된다
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7조제2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
고려해볼 때 개정안의 관련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.

문 의 처

02)6788-5073

포함되어야 한다. 다만, 제5호의2의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훈령
· 예규 및 그 밖의 방법(이하 “훈령·예규등”이라 한다)으로 정할 수 있다.

1. 행정기관의 설치와 그 소관업무

2.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

3. 삭제

4. 직위에 부여되는 계급(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직위의 경우에는 공
무원의 종류)

5. 공무원의 종류별·계급별 정원(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
별 정원)

5의2. 직제시행규칙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

6. 기타 행정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